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4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교통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3조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규정 삭제

○ 조례안 제4조

-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구성 및 운영)”을“(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과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의 제목“(시행규칙)”을“(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

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준용 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<u>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</u></p> <p>② <u>교통업무담당부서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분야 유관기관공무원 및 전문가를 「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」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과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<u>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</u></p>

<신 설>

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
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
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
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
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
다.

<신 설>

제5조(준용 규정) 이 조례에서 규
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
한 하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
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
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 자	도시주택과 김 찬 수
연 락 처	(033)330-2470

관계 법령

□ 교통안전법

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교통안전법 시행령

제8조(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1.8.19., 2012.9.7.>

② 생략